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3 년 4 월 16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트러스톤자산운용(주)
(영문명) Truston Asset Management Co., Ltd.
(홈페이지) <http://www.trustonasset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, 10 층 (여의도동)
(전 화) 02-6308-0500

대 표 이 사 : 황성택, 김영호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부사장
(성 명) 이성원 (전 화) 02-6308-0500

작 성 자 : (직 책) 이사
(성 명) 김봉경 (전 화) 02-6308-0500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, 동법 시행령 제 36 조제 2 항제 1 호바목, 같은 항 제 2 호다목, 같은 항 제 3 호다목 및 같은 항 제 4 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9 조제 1 항제 15 호에 의거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 6-8 호)

소송 등의 제기.신청

1. 사건의 명칭	주금납입금지 가처분신청
2. 원고.신청인	당사
3. 청구내용	주금납입금지 가처분신청
4. 관할법원	서울동부지방법원
5. 향후대책	-
6. 제기.신청일자	2013.04.15
7. 확인일자	2013.04.16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